산업통상자원부 「제조업」르네상스	보 도 참 고 자 료	보다 나은 정부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9. 8. 2. (금)	담당부서	산업정책과
담당과장	이원주 과장(044-203-4210) 박지운 팀장(044-203-4230)	담 당 자	조정희 사무관(044-203-4231)

「기업활력법」 2024년까지 5년 연장, 신산업 진출도 지원

-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개정안 국회 통과 -

- ◆ **적용범위 확대: 과잉공급 업종 기업(현행) + 신산업 진출 기업 + 산업위기지역 주된산업 기업**
- ◆ **공동사업재편 심의기준 완화**
- ◆ **인센티브 보강: 산업용지 등 처분규제 특례 신설**

□ 오는 8.12일 일몰을 앞둔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(이하, 기업활력법)」의 **개정안이 8.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**

* 기업활력법 개정 경위: 정우택 의원 발의('18.10.26)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이하, 산중위) 상정('18.11.26) → 위성곤 의원 발의('19.1.23) 및 산중위 상정('19.3.12) → 산중위 법안소위 병합심의·통과(7.5) → 산중위 전체회의 통과(7.12) → 법사위 통과(7.31) → 국회 본회의 통과(8.2)

○ 개정안은 「기업활력법」의 유효기간을 **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**하고, **적용대상을 현행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, 산업위기지역(군산, 거제 등)의 주된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확대**하는 한편, **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 하는 경우* 심의기준을 완화**하고, 「기업활력법」 승인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으로 **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를 신설**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

* 공동사업재편 예시: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

○ **이 법은 8.13일부터 시행**될 예정이나,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되어 **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**될 예정임

□ **산업통상자원부(성윤모 장관)**는 금번 **「기업활력법」 개정이**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**우리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**에 이뤄졌으며, **주력산업 활력 제고, 4차 산업혁명 대응,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** 등을 위한 **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효과적으로 지원**할 것으로 내다보고,

○ 개정 「기업활력법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**신산업 진출 및 산업위기대응지역 기업의 적용 범위·요건 등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**해 나갈 것임을 밝힘

□ 「기업활력법」은 **과잉공급 업종**에 속한 **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**을 돕기 위해 **상법, 공정거래법,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** 해주고 **자금 등 정책지원**을 하는 3년 한시법으로서 2016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, 현재까지 중소·중견기업 중심으로 **109개사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**받았음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조정희 사무관(☎044-203-42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